

 부산과학기술대학교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	법인카드 관리 규정	문서번호		BIST-VI-038	
		제정일자		2013. 3. 1	
		개정일자		2017. 9. 1	
	개정번호		2	페이지	1 / 4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이라 한다)의 교직원에게 지
불되는 법인카드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인카드의
관리 및 운영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지출의 범위) 업무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
사용목적과 처리 근거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.

제3조 (발급) ① 카드발급은 국내 및 국내외 카드로 구분하여 발급 한다. [2017. 9. 1]
② 카드발급 시 발급대장을 작성.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는 보안을 유지한다.
③ 카드발급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명의로 법인 카드 관리부서에서 개설한다.(별표1)
[2017. 9. 1]

제4조 (법인카드 신청) 개인 또는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전에 사용 부서장과 예산
집행 부서장의 협의 후 사용목적에 따른 기안지를 제출한다. [2017. 9. 1]

제5조 (지급) 법인카드의 지급은 법인카드 관리부서에서 사용자 및 사용부서의 기안지를
접수 한 후 지급한다. [2017. 9. 1]

제6조 (사용의 제한) ① 고유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용무로는 사용할 수 없다.
② 카드 사용은 제한업종을 설정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다. 제한업종은
유흥업종(유흥주점, 스넥카페, 맥주홀, 카페, 바 등), 위생업종(이.미용실, 네일아트,
마사지, 지압원 등), 레저업종(골프연습장, 당구장, 헬스클럽 등), 사행업종(오락실, 복권
방 등), 기타업종(성인용품점, 충포류판매 등)을 말한다. [2017. 9. 1]
③ 원칙적으로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사전 승인을 득할 시에는 사용 할 수 있
다. [2015. 3. 1] [2017. 9. 1]

제7조 (관리책임) ① 카드 사용자는 업무상 사용할 경우 반드시 집행품의 한도내에서 사
용하고 사용 후 카드를 즉시 법인 카드 관리부서로 반납한다.(별표2) [2017. 9. 1]
② 법인카드 분실시 관리부서 및 법인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분실 시 사유가
개인에 의한 부주의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손실금 전액을 법인 카드 사용자가 부담
하여야 한다. [2017. 9. 1]

제8조 (위장가맹점의 사용제한) 카드 사용자는 카드매출 전표 최종 서명전에 가맹점 실
제 상호명과 매출 전표상 상호명의 동일성을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한다.

제9조 (카드할인의 금지)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현금화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.

제10조 (영수증 제출) ① 업무상 법인카드를 사용한 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영수
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영수증 제출시 매출전표에 사용자의 이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서명란에 기록
한다.

제11조 (교체지급) 카드소지자에 한하여 유효기한 만료 및 IC칩 손상 등의 사유로 카드를
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카드 관리부서에 위 사실을 통보하고 교체 받을 수 있도
록 한다. [2017. 9. 1]

제12조 (반환) 카드소지자가 업무상 필요하지 않거나 보직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한다.

 부산과학기술대학교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	법인카드 관리 규정	문서번호		BIST-VI-038	
		제정일자		2013. 3. 1	
		개정일자		2017. 9. 1	
		개정번호	2	페이지	2 / 4

제13조 (환수)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법인 카드 관리부서에서 환수할 수 있다. [2017. 9. 1]

1. 개인용도나 업무목적 외 사용시
2. 법인카드 관리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

제14조 (재발급의 제한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발급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부주의 등으로 2회이상 법인카드를 분실한 경우
2. 규정에 의하여 법인카드가 환수되고, 1년이 미경과한 경우 [2017. 9. 1]
3. 기타 법인카드 재발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5조 (제재) 본 규정 제13조(환수)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거나 사용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미완료시 사용자 또는 사용부서에서 사용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. [2017. 9. 1]

제16조 (기타) ①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신용카드 인센티브(포인트, 마일리지, 적립금 등)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별도의 인센티브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할 경우 예산집행 부서장의 허락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. 3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. 3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. 9. 1부터 시행한다.

